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벌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 〉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53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원이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19.
3. 회부연월일 : 2026.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광업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광업권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9조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광업시설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에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재 수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등).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u>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u> ,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 ----- ----- -- 때에는 <u>산업통상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u> ----- --- <u>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며</u> ----- -----.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25조(벌칙) ----- ----- -----.
5. 제9조, 제13조제1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9조를 위반하여 <u>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u>
6. ~ 7. (생략) <u><신설></u>	<u><삭제></u> 6.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13조제1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현행	개정안
8. (생략)	8. (현행과 같음)
제26조(과태료) ① (생략)	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설>	5의2. 제9조를 위반하여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9조¹⁾에 따라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됨.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현행법 제9조에 따른 검사를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받는 완성검사와 검사 이후 2년이 지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성능검사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²⁾

1) 「광산안전법」

제9조(성능검사 등) 광업권자나 조광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와 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2)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검사(이하 “완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를 면제한다.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은 후 2년이

한편, 광업시설검사의 실무 처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수행하고 있음.

현행법 제25조제5호³⁾는 이와 같은 검사 의무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제

지날 때마다 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시설을 갱외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성능검사를 면제한다.

1. 완성검사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
- ③ 「광업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중단인가 기간 중에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광업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채굴 재개 신고를 할 때에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결과에 따라 다음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능검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미리 그 검사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승인대상 광업시설 공사)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업시설의 설치공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폐지(廢止)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2.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3.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捲揚)장치
4. 1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5.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6.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7. 선풍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乾式)의 선풍장은 제외한다]
8. 설비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9.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10. 해양채굴시설
11.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內容積)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저장탱크
12. 육상과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13. 가솔린플랜트
14. 스테빌라이저(stabilizer) 플랜트
15.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
16.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1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광산안전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

9조를 위반한 자를 비롯하여, 광산안전관리직원 선임 의무를 위반한 자(제13조제1항) 및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한 광산안전관리직원(제13조제4항), 위해발생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제22조제2항)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가 새로운 광업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와 이후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성능검사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 광업시설근로자에 대한 위해 및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됨.

다만, 완성검사를 통해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이 이미 이루어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기적(현행 2년)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검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형벌 수준으로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투자·고용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음.

금에 처한다.

5. 제9조, 제13조제1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을 위반한 자

이에 개정안은 완성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안 제25조제4의2호),

상대적으로 위반 수준이 경미한 성능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안 제26조제2항제5의2호) 제재 수준을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경제활동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성능검사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질서벌로서의 제재수단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 제26조제2항4)은 주로 안전교육을 실시·이수하지 아니하거나(제1호 및 제2호)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제3호), 또는 현행법상 규정된 신고 또는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4) 「광산안전법」

제2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작업 개시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2.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 안전관리직원 및 광산근로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전문기관
4.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5. 제8조제2항, 제13조제3항 또는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6.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17조를 위반하여 광산안전도를 작성하여 광산사무소에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그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성능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의 의무위반의 경중이 해당 사유들에 준하여 같은 수준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⁵⁾

또한, 현행법 제9조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에 대하여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이행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검사에 합격하지 않을 경우 시설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현행법 제25조제5호는 이와 같은 시설 사용 금지 의무를 포함한 제9조를 위반한 행위 일체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를 경우 완성검사와 성능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형벌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시설사용 금지 의무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미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설정하고,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성능검사 또한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으로 실시되므로, 이를 실시하지 않은 자의 의무위반의 경중 대비 과태료 부과 수준이 적정하다고 설명하였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 25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 의 처
02)6788-5468